

이 상품은 보험상품이며 은행의 예·적금과 다릅니다.

연금

무배당 KB 참좋은연금보험

상품안내장

*b KB라이프

연금보험이 쉬워지면
은퇴가 즐거워집니다



※ 이 상품은 보험상품이며, 은행의 예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 시에는 해약한 금액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모집종사자는 본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KB라이프생명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입니다. ■
 ※ 해당 모집종사자는 KB라이프생명과 외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

무배당 KB 참좋은연금보험

100세 시대를 위한 현명한 연금설계가 필요합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한 연금설계

연금재원을 시중금리에 연동한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함으로써 연금을 통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연금수령방법 선택 및 자유로운 변경

연금개시전까지 연금지급형태를 종신연금형 / 확정연금형 / 상속연금형 중 2가지 이상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보험료 납입 및 중도인출 가능

고객님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유연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며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중도인출, 여유자금이 생기면 추가납입,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등 편리한 자금운용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유지하고 보너스 받아주세요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 시점, 연금개시 나이 연계약해당일)에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 1종 적립형에 한함

실속있는 보장과 다양한 연금플랜으로 노후생활에 든든함을 채우세요!



무배당 KB 참중은연금보험은

연금재원을 시중금리에 연동한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연금설계가 가능합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비과세 혜택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

- 중도인출
- 추가납입가능
- 장기유지보너스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개시

다양한 연금설계

생활설계자금(0~50%)

종신연금형(20년보증, 100세보증 또는 기대여명보증)
▶ 정액형 / 체증형(5%)

확정연금형 ▶ 5, 10, 15, 20, 30년형

상속연금형

고객의 투자를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최저보증이율제도

최저보증이율 적용

계약후 경과기간 5년미만 연복리 1.0%, 경과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연복리 0.75%,
경과기간 10년이상 연복리 0.5%

| 가입자 유의사항 |

- ①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계약자적립액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②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 개시 된 이후에는 이 보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

상품의 구성

주계약	무배당 KB 참좋은연금보험(1종 적립형)
제도성특약	지정대리 청구서비스특약, (무)특별조건부특약, 특정 신체부위 ·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약

연금지급형태, 연금개시나이, 보험기간 및 납입주기

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형 - 개인형(20년보증, 100세보증 또는 기대여명보증) : 정액형 또는 체증형(5%)	
연금개시나이	45세 ~ 85세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장개시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로부터 종신까지
보험료납입주기	월납	

※ 계약체결시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설정되고,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전까지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기대여명'은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해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가입시점 통계표에 따른 피보험자의 성별 · 연령별 기대여명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연금개시 나이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만, 기대여명이 5년 미만일 경우 기대여명은 5년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관련 세제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최소거치기간 및 가입나이

보험료납입기간	최소거치기간	가입나이
3년납	12년	0세 ~ MIN [연금개시나이- 15, 70] 세
5년납	10년	
7년납	8년	
10년납	5년	

보험료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계약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로 합니다.

기본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최소보험료(1구좌당)	최대보험료(1구좌당)
3년납	0세 ~ 61세	20만원	100만원
	62세 ~ 65세	15만원	
	66세 ~ 69세	20만원	
	70세	15만원	
5년납	0세 ~ 54세	15만원	
	55세 ~ 65세	10만원	
	66세 ~ 70세	15만원	
7년납	0세 ~ 65세	10만원	
	66세 ~ 70세	20만원	
10년납	0세 ~ 65세	10만원	
	66세 ~ 70세	15만원	

가입안내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 KB손해보험 계약자 보험료 할인

- ① 가입시점 당시 KB손해보험에 유지 중인 유효한 계약을 1건 이상 보유한 계약자가 본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기본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는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 ② 가입 이후 KB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계약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증빙한 일자 기준으로 차회부터 기본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 ③ KB손해보험 실효계약이 본 상품 가입 이후 부활(효력회복)된 경우, 부활 이후 계약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증빙한 일자 기준으로 차회부터 기본보험료를 할인합니다.
- ④ 본 할인이 적용되는 KB손해보험의 계약은 장기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상품의 유효한 계약으로 합니다.
- ⑤ 본 할인은 월 기본보험료 20만원 이하인 경우 1.0%, 월 기본보험료 20만원 초과인 경우 1.5%를 적용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

- ①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까지 납입 가능한 기본보험료 납입총액(선납포함)의 200%를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추가로 납입가능합니다.
- ②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까지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기본보험료와 같이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추가납입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200%를 한도로 납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기간중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적립보험료 납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저축성보험에 추가 납입하실 경우 사업비 절감효과로 새로운 저축성보험에 추가가입하는 것 보다 해약환급률 및 만기환급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다만, 추가납입한도 및 횟수, 납입가능 기간 등은 해당상품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년12회에 한하여 1회당 인출신청시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80%범위 이내에서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②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후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1구좌당 300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 ③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④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⑤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수수료는 없습니다.
- ⑥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피되는 이자만큼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연금액 및 해약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 ①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함
※ 납입중지된 기간만큼 납입기간 연장
- ② 납입 일시중지 기간 : 신청횟수에 관계없이 총 36개월(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
- ③ 신청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6개월 분의 기본보험료」 미만일 경우, 납입 일시중지를 신청 불가
- ④ 납입 일시중지 기간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 불가
- ⑤ 납입 일시중지 기간 동안 적용하는 월공제액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에서 공제
- ⑥ 납입 일시중지로 인하여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이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후 최초로 돌아오는 연계약 해당 일(계약일로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이 자동연장 단, 납입일시중지 신청에도 불구하고, 연장된 연금개시시점 피보험자의 나이가 85세를 초과하는 때에는 납입중지를 신청할 수 없음

가입안내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 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은 6개월 이내(단, 3년납 이하는 11개월 이내)로 합니다. 선납보험료는 월납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주계약의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당해 보험료납입해당일에 대체합니다.

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 ①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여 드립니다.(단,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에 해당 약관에 따른 생존연금이 지급개시 되는 경우,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장기유지보너스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장기유지보너스 금액 =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X 장기유지보너스율
 -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장기유지보너스율		
	3년납	5년납	7년납 이상
계약일부터 10년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0.5%	1.0%	1.5%
연금개시나이의 연계약해당일 (단,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1.0%	1.5%	2.0%

주1) 기본보험료의 선납이 있는 경우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상기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2)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가입시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

- ②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유지보너스를 적용합니다.

조기연금개시 옵션에 관한 사항

- ① 조기연금개시시점의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이상인 경우
- ② 조기연금개시시점에 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하였거나 계약일 이후 10년이 지난 유효한 계약의 경우 (단, 확정연금형으로 전환 시에는 10년이 지난 유효한 계약의 경우)
- ③ 조기연금개시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가 아래와 같은 경우

연금지급형태	조기연금개시 가능한 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
종신연금형	45세 ~ 85세(단, 부부형의 남자는 48세 ~ 85세)
확정연금형	35세 ~ 85세
상속연금형	

연금지급형태 및 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 변경에 관한 사항

① 계약체결시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지고,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 중 2가지 이상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의 구성 비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5년(60회)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지급형태 중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확정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은 종신연금형과 동시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연금지급형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신연금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형(20년보증, 100세보증 또는 기대여명보증) : 정액형 또는 체증형(5%) • 부부형(20년보증) : 정액형 또는 체증형(5%) 	보장개시일부터 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35세 ~ 85세		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상속연금형		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2가지 이상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을 이 상품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남자일 때 종신연금형(부부형)의 최저연금개시나이는 48세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남자일 때 종신연금형(부부형)의 최저보험나이는 3세로 합니다.

② 계약체결시 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은 0%로 정해지고,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전에 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0~50%까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5년(60회)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지급형태를 종신연금형으로 할 경우 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은 0%로 합니다.

보장내용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금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재해장해급여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매월 30 만원 (36회 지급)

- 주1)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이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계약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계약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 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의 매월 해당하는 "보장계약순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인출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생활자금 인출 포함)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 이하일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생활자금 인출 포함)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으로 합니다.
- 주2) 고도재해장해급여금은 매월 보험금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드리며, 최초의 보험금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부터 3년을 고도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보험금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봅니다.
- 주3)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주4)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인출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계약자는 해당 약관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생활설계자금선택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금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생활설계자금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계약자적립액에 "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종신연금형	개인형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20년보증, 100세보증 또는 기대여명보증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 정액형 - 체증형(5%)	
	부부형	주피보험자	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 정액형 - 체증형(5%)
		종피보험자	주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 이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보증지급 기간 (20년)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증지급기간 이후 매년 당해년도 주피보험자 연금액의 50% 지급
확정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계약자적립액에 (1-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동안 지급		
상속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계약자적립액에 (1-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연금수익자에게 지급)		

- 주1)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이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계약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계약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 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의 매월 해당하는 "보장계약순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인출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 이하일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으로 합니다.
- 주2) "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이란 생활설계자금의 인출을 위해 계약자가 회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한 비율을 말합니다. 다만, "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을 0%로 하며, 이 경우 생활설계자금을 인출할 수 없고,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 전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액이 산출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5년(60회)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지급형태를 종신연금형으로 할 경우 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은 0%로 합니다.

보장내용

- 주3) 생활설계저자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 “생활설계저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고 “생활설계저자금 지급 신청일”까지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비에 따라 계산됩니다.
- 주4) “생활설계저자금 지급 신청일”이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생활설계저자금을 지급받기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생활설계저자금의 지급을 신청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을 “생활설계저자금 지급 신청일”로 합니다.
- 주5)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개인형은 피보험자, 부부형은 주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보증지급기간중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 주6) 종신연금형(100세 보증)은 “100세-연금개시나이” 횟수만큼 연금액이 보증지급됩니다.
- 주7) 종신연금형의 경우 체증형(5%)은 10차년도 까지 직전년도 연금액에 5%로 체증하여 지급한 후 1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해당년도의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8) 확정연금형으로 변경한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해당 확정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각 확정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각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 주9)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주10)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확정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주11) 연금액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12) 2가지 이상의 연금지급 형태를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계산된 각 연금액의 합계액을 매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5년(60회)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지급형태 중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확정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은 종신연금형과 동시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주13)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생존연금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생존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해약환급금 예시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기준 : 남자 40세, 월납, 10년납, 기본보험료 50만원, 60세 연금개시, 단위 : 만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A)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평균공시이율 연 2.25% 가정시 (공시이율을 상한으로 함)		공시이율(2.90%) 가정시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해약환급금(C)	환급률(C/A)	해약환급금(D)	환급률(D/A)
3개월	150	-	0.0%	-	0.0%	-	0.0%
6개월	300	96	32.1%	97	32.5%	98	32.6%
9개월	450	241	53.6%	243	54.1%	244	54.4%
1년	600	387	64.5%	390	65.1%	392	65.4%
3년	1,800	1,562	86.8%	1,595	88.6%	1,611	89.5%
5년	3,000	2,761	92.0%	2,851	95.0%	2,899	96.6%
7년	4,200	3,965	94.4%	4,162	99.1%	4,260	101.4%
10년	6,000	5,811	96.8%	6,245	104.0%	6,453	107.5%
15년	6,000	5,939	98.9%	6,960	116.0%	7,425	123.7%
20년	6,000	6,190	103.1%	7,880	131.3%	8,666	144.4%

- 주1)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유지비용, 해약공제금액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주2)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주3) 공시이율은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현재(2022년 12월) 공시이율은 2.90%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경과기간 5년미만은 연복리 1.0%, 5년이상 10년미만은 연복리 0.75%, 10년이상은 연복리 0.5%입니다.
- 주4) 상기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적용이율이 가입시점부터 경과기간동안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주5)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6) 상기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은 연계약해당일 전일 기준의 해약환급금에 장기유지보너스 해당금액(계약해당일 기준)을 포함한 금액이며, 계약해당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해지 시 예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7) 상기예시된 보험료는 "할인 전 보험료"입니다.
- 주8) 상기예시금액은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25%, 현재(2022년 12월)의 공시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적용상품은 보험계약대출이율) 2.9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단,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 주9)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직 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주10) 상기 예시금액은 세전기준입니다.

연금지급액 예시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기준 : 남자 40세, 월납, 10년납, 기본보험료 50만원, 60세 연금개시, 단위 : 만원

연금지급형태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평균공시이율 연 2.25% 가정시 (공시이율을 상한으로 함)	공시이율(2.90%) 가정시
종신연금형 (정액형)	개인형			
	20년보증	188	318	385
	100세보증	163	285	349
	기대여명보증	187	316	382
확정연금형	5년 확정	1,238	1,630	1,815
	10년 확정	626	860	972
	15년 확정	423	605	693
	20년 확정	321	478	555
	30년 확정	219	352	419
상속연금형	1차년도 이후	30	171	241
	사망시 계약자적립액	6,160	7,706	8,422

※ 계약 체결 시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지고, 연금개시 전까지 연금지급형태를 확정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 선택 시 연금지급개시 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주1) 상기 예시금액은 2022년 12월 현재 공시이율 기준(연복리 2.90%)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주2) 실제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 시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주3) 공시이율은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계약후 경과기간 5년미만은 연복리 1.0%, 경과기간 5년이상 10년미만은 연복리 0.75%, 경과기간 10년이상은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주4)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적용이율이 가입시점부터 연금개시시점까지 계속 유지 된다고 가정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주5) 상기예시금액은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 평균공시이율 2.25%, 현재(2022년 12월)의 공시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 적용상품은 보험계약대출이율) 2.9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단,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주6)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주7) 상기 금액은 세전기준입니다.

가입시 반드시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호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가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 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이 계약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가입제한

보험계약 가입시 위험직종 등으로 인해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장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가입내용, 보장내용, 해약환급금 예시, 알아두실 사항 등)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적용이율에 관한 안내

이 보험상품은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이율은 주계약 연복리 2.30%입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 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상담]

- 당사안내 : 1588-3374
- 생명보험협회 : 대표전화(본부) (02)2262-6600, 소비자보호부 (02)2262-6562

[분쟁조정]

- 당사안내 : 1588-3374
-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 (국번없이) 1332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KB라이프생명 보험상품 및 가격 공시실 : www.kblife.co.kr
-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 비교 공시 : www.klia.or.kr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KB라이프타워 (06253)
www.kblife.co.kr

고객센터 1588-3374



- KB 금융그룹
- KB 국민은행
- KB 증권
- KB 손해보험
- KB 캐피탈
- KB 부동산신탁
- KB 데이터시스템
- KB 국민카드
- KB 자산운용
- KB 라이프
- KB 저축은행
- KB 인베스트먼트
- KB 신용정보